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88
----------	-------

발의연월일 : 2026. 10. 14.

발 의 자 : 정진욱 · 박성민 · 김성범
김원이 · 박균택 · 이상휘
장철민 · 양부남 · 권향엽
정준호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 · 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조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첨단미래선박 중심의 법령은 일부 제정된 바 있으나 중소조선 및 기자재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전무하여, AI 전환,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에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전략산업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및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첨단미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첨단미래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조선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과 시설구축에 인가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전략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첨단미래조선사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국가는 조선해양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6조).

아. 국가는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정부는 한미조선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전략산업안보역량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및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기·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해상에 설치된 이동식·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구조물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부속 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

2. “첨단미래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소형모듈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용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바. 항로 개척 등을 위한 쇄빙선(碎氷船) 및 내빙선(耐氷船)

사. 수소,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사용하는 추진기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기관 등 친환경 추진기관 또는 화물창·연료창 등의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

아.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가 탑재된 선박

자.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향상 또는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3. “첨단미래조선산업”이란 첨단미래선박을 개발·제조·가공·조립

- 재생·개조·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기기·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조선사업자”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5. “중소조선산업”이란 조선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6.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선박 건조계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선수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7. “핵심기자재”란 화물창, 추진기관, 연료전지 시스템, 친환경 추진 시스템, 항법·통신 장비 등 선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8. “스마트야드”란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경영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용접로봇 등의 지능형 로봇과 3차원 스캐너 등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선박 건조·개조 또는 수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9.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조선산업의 설계·생산·운항·유지관리 및 산업운영 체계를 고도화·자동화·지능화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한미조선협력”이란 2025년 11월 14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

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조선 분야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천50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추진하는 해운 및 조선 분야의 협력 시책을 말한다.

11.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등을 통하여 규모를 확장하거나,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 첨단미래조선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선산업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조선사업자는 첨단미래선박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공급망 안정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조선사업자 또는 조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첨단미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시책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기술 개발·표준화·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중소조선산업자 및 기자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핵심기자재 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야드 구축 등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에 관한 사항
8.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한미조선협력 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조선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세제지원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12. 조선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선산업·조선기술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첨단조선전략회의) ①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조선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기자재의 선정 및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입주기업

지원

4. 한미조선협력 등 국제협력 추진사항의 점검
5. 기술 개발·표준화·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6. 제44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7. 제45조에 따른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조선산업·조선기술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과 조선기술에 대한 국내외 시장정보·기술정보·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조선산업에 제공할 수 있으며,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보

급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보급의 대상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술개발, 실증 등 산업기반 조성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설립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조선산업 관련 학술 및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조선산업 관련 협회·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립한 조선산업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조선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첨단미래선박의 실증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선박 관련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에 대한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및 운영
2. 실증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3. 실증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의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조선산업 분야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조선산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시설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첨단미래선박 실증센터 설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선박의 실증을 위하여 첨단미래선박 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첨단미래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첨단미래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실증
2. 첨단미래선박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첨단미래선박 관련 정책 및 기술에 대한 국내외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첨단미래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연구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5. 첨단미래선박 및 첨단미래조선산업 시장 상황 조사·분석
6. 첨단미래선박 실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연수
7. 실증을 완료한 첨단 선박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8. 첨단미래선박에 대한 이해와 활용·확산을 위한 출판 및 홍보·전시·교육
9. 그 밖에 실증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실증센터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실증센터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실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증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실증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⑦ 실증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강화, 친환경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야드 구축 및 디지털 생산체계 전환

2. 인공지능 기반 설계·생산·품질관리·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3. 디지털트윈, 산업데이터 플랫폼 및 가상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4. 지능형 로봇, 자동화 용접·도장 시스템 등 첨단 자동화 설비의 도입 및 실증
5. 자율운항선박, 지능형 기자재 및 원격·무인운항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6.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 관련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7. 그 밖에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교육, 직무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안정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지원) 국가는 조선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 및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허 취득·유지 비용 지원
2.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3.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조사 및 정보 제공
4.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
5.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제4장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전략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첨단미래조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첨단미래조선산업 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소재하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클러스터를 지정·구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우선적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클러스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④ 클러스터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다른 단지와 연계 및 중복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주요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와 연계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과의 연계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과의 연관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산업 집적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단지·집적지 등과 중복하여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클러스터의 조성·운영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클러스터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2. 클러스터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3. 첨단미래조선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투자유치 촉진

4. 첨단미래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5. 첨단미래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설 구축

6. 첨단미래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 알선

7. 첨단미래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8. 첨단미래조선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 물류 효율화 및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9. 클러스터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반과 시설의 구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클러스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전략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미래조선산업 관련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는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내 첨단미

래조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제5장 전문인력 양성 및 숙련인력 유지

제18조(인력양성 및 숙련인력의 유지) ① 정부는 첨단미래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미래조선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
2. 첨단미래조선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지원
3.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유지 및 안정
5. 퇴직근로자 등 첨단미래조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기술 계승

6. 첨단미래조선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8. 그 밖에 첨단미래조선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첨단미래조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첨단미래조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숙련 인력의 유지·관리) ① 국가는 조선산업 분야 숙련기술을 보유한 내국인 전문인력을 유지·관리하고 신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퇴직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기능·지식이 후진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 인력에 대한 출입국관리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필수선박의 건조와 이용

제22조(필수선박의 건조)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척수를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고 국가필수선박을 대한민국에 소재한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구성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제23조(국가필수화물 운송선박의 국내건조 및 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운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국가필수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해운업자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조선기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선박을 이용하여 해당 화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운송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조선기자재 및 공급망 생태계 지원

제24조(조선기자재 생태계 지원) 국가는 조선해양 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자재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성능검증·인증·실증 지원
2. 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연구개발 과제의 지정·지원
3. 도장·도금·주조·단조 등 기초 기자재산업의 기술개발·생산설비·인력 지원
4. 해외 기자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25조(공동개발의 지원) ① 국가는 첨단미래선박 관련 기자재를 개발

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기자재 관련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조선소와 기자재 관련 기업 간 컨소시엄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미래조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연구개발 과제를 지정·지원하고, 공동실증사업, 성능검증 및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미래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표준화, 공동실증, 공급망 안정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선소, 기자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 단체 간 공동 연구개발 또는 공동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또는 공동사업이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 및 전략산업안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적용 배제 또는 완화의 대상·범위·절차 및 협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핵심기자재의 국산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핵심기자재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2. 국산 핵심기자재의 성능검증·인증 비용 지원
3.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 보조 또는 융자

4. 핵심기자재 국산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국산 핵심기자재의 해외 인증 획득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산 핵심기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산 핵심기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조선산업 공급망 중핵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의 공급망 안정, 전략기술 확보 및 전략산업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자재·소재·부품·소프트웨어 또는 생산기반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조선산업 공급망 중핵기업(이하 “중핵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핵심기자재 및 전략기술의 국내 생산·공급 역량
2. 공급망 안정성 및 대외 의존도 완화 기여도
3. 기술혁신 역량 및 연구개발 수행 능력
4. 조선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산업 연계성
5. 국가안보·경제안보 및 전략산업안보 측면의 중요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핵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사업화 및 실증에 대한 지원

2. 생산시설 구축·증설 및 설비투자 지원

3. 금융·보증·융자 및 세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5. 국내외 판로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6. 공급망 안정화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중핵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및 기술역량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핵기업의 지정 기준·절차·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초도 납품실적 확보의 지원) 국가는 첨단미래선박 및 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초도 납품실적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 발주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중소조선산업 지원 및 지역상생

제29조(중소조선사업자에 대한 특화 지원) ① 국가는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조선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금융 지원
2. 중소조선사업자의 스마트야드 등 인공지능 전환 지원
3. 중소조선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중소조선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조선사업자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
6. 연구개발 또는 연구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7.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② 국가는 중소조선사업자 수주 확대를 위하여 공공 발주 물량의 일정 비율을 중소조선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선수금환급보증의 지원)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조선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증한도, 보증요율 및 심사기준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상생 발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사업자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선사업자 소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지역 내 조선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조선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환경 개선
4.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② 조선사업자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진작,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장 재정 및 금융지원

제32조(세제 및 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기업 및 연구개발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금융기관은 중핵기업의 연구개발

· 시설투자 · 사업재편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세제 · 금융 · 보증 및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제 및 금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① 정부는 첨단미래조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미래조선산업을 영위하는 조선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미래선박의 개발 · 건조 ·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험설비 등의 구입
2. 첨단미래선박의 실증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3. 스마트야드 구축 등 조선산업 인공지능 전환(AI)을 위한 시설 투자
4.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5. 첨단미래선박의 해외시장 진출
6. 공급망 안정, 전략기술 확보 및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첨단미래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핵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 규모·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34조(우선구매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건조한 첨단미래선박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선박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선박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리스 등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36조에 따른 첨단미래조선기금에 출연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36조(첨단미래조선기금의 설치) ① 국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미래조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금 또는 융

자금

3. 조선사업자 및 관련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4.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정책성 기금 또는 펀드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융자금
5. 항만시설 사용료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연자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7.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7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조선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스마트야드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국내 조선소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3. 조선사업자 간 공급망 상생협력 지원
4. 조선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지원
5. 조선산업의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6. 조선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선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재고확대에 따른 구매·유지·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7.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을 대한민국에 소재한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건조자금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8.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의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건조자금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제협력 및 해양방위산업 지원

제3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2.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

3.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4. 외국 정부·기관 등과의 정보교류, 공동 조사·연구, 공동 행사 개최
5. 외국 군함의 국내 조선소에서의 건조·개조·수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0조(한미조선협력 지원) ① 정부는 한미조선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미국 해군·해안경비대 선박의 정비·수리·개조 사업 참여 지원
2. 미국 상선의 건조·정비 협력 사업 참여 지원
3. 한미 조선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
4. 미국 조선소와의 기술협력 및 인력 교류 지원
5. 미국 내 조선소 인수·합작투자·시설 확장 등과 관련된 행정적·금융적·법률적 지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조선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해양방산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과 방위산업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방산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방산기업이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방산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산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방산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해양방산 수요예측 및 공급망 안정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양방산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공급망 유지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해양방산 분야의 중장기 수요예측 및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함정 건조계획, 핵심기자재 수요, 생산능력 및 공급망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양방산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기 함정 및 해양방산 수요 전망의 수립 및 제공
2. 핵심기자재 및 원자재 수급 안정화 지원
3. 생산설비·전문인력 유지 및 투자 촉진 지원
4. 해양방산 공급망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및 공급망 안정화 시책에 따라 해양방산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해양방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해양방산기업의 시설 설치·보수·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해양방산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해양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양방산기업이 건조한 선박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 관련 국제 전시회·설명회 참가 지원
 2. 수출 대상국과의 정부 간 협력 지원
 3. 그 밖에 해양방산기업 건조 선박 수출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정부는 해양방산기업의 선박건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비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거나 정부 비축분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특례

제44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을 신속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조선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2. 제13조에 따른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
3.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클러스터 조성·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4.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필수선박 건조, 핵심기자재 국산

화 및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5. 그 밖에 전략회의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안보·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또는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① 첨단미래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미리 해

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전략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첨단미래선박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4. 제4항에 따른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승인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항해하는 자는 첨단미래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첨단미래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
직원의 직무

⑤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실증센터에 공유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와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4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장 벌칙

제49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